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9. 11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불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불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환 구

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그 동안 관리·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연 1천분의 50에서 연 1천분의 25로 하향 조정함(안 제23조제3항).
- 다.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29조).
- 라.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제1항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2008. 4. 18.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,

-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 하향조정과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상향 조정하고,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
- 대부료의 감면과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조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